

대 회 규 정(기본)

제1조 ~ 제5조 생략 “대회 명칭 및 토너먼트, 리그전 내용”

제6조 본 대회 경기 시간은 총 60분(15분*4쿼터)으로 하며, 휴식 시간은 쿼터 종료 후 2분, 2쿼터 종료 후 10분, 3쿼터 종료 후 2분으로 한다.

1.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슛 아웃을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.
2. 슛 아웃은 슛 아웃 경기 규정에 따른다.
3.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감독관(T.O 등) 통제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18명 엔트리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한다.

제8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, 경기 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.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.

(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: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, 득점차가 발생 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.)

제9조 본 대회 경기 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 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1.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 시간의 경기만 실시한다.
2.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정규시간의 경기를 실시한다.
3. 슛 아웃은 득점차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며, 5명 중 미실시 선수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부터 실시한다.

제10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 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.

제11조 **대회 중 발생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**

한다.(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.)

1. 경기 도중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며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(2분) 이내에 출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, 우리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.
(몰수게임으로 처리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)
2.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우리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.
3. 경기중 시행 규칙에 의거 벤치 퇴장 당한 지도자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.
A. 행위 강도에 따라 1~10경기 출전정지 하며, 사안에 따라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.
B. 레드카드로 인한 벤치 퇴장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.
4. **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**

연번	대상	행위	처벌기준	비고
1	단체(팀)	* 심판관정 불복 경기방해 - 경기 중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기 운영.(심판관정 불만 및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는 행위 등)	실격패 처리(성적 불인정) 및 6개월 이하의 출전 정지	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에 따른 조치 후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.
2	선수	가. 고의적인 행위로 상대 선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	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	

	나. 경기 중 비방하는 행위(손 제스처, 공격적 언행 등)	2경기 이상 5경기 이하의 출전정지	
	다.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헐박, 명예훼손, 모욕적인 언동을 할 시	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	

5.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(옐로우, 레드카드)와 선수는 [완전퇴장(레드카드)]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 6. 경기 중 발생한 사안의 이의신청(부정선수, 심판판정, 경기장 질서문란)은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(단장, 부장, 감독 명의로)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(이의 신청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)
이에, 사안은 경기위원회(T.D, A T.D, U.M)에서 결정한다.
 7. 팀 벤치에 감독, 코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“경기 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 8. 상기 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“경기 중 시행 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 9. 본 대회 참가 신청 마감 후 불참한 팀은 감독 벤치 활동 6개월 정지 처리한다.
 10. 벤치에 지도자가 없는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.
- 제12조 본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보관 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.
- 제13조 본 대회 대표자회의 시 대진 추첨은 팀 관계자(단장, 부장, 감독, 코치, 트레이너)만 참가할 수 있다.(선수는 불가하며, 팀 관계자가 아닌 자가 추첨 시 재추첨 원칙으로 한다.)
- 제14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.